

회원 관리 규정

제정 : 1999. 7. 13.

개정 : 2001. 4. 10. / 2002. 3. 12. / 2004. 3. 9. / 2005. 3. 8. / 2007. 5. 31. /
2007. 9. 11. / 2007. 11. 13. / 2009. 7. 14. / 2010. 5. 11. / 2010. 11. 9. /
2011. 3. 29. / 2012. 12. 11. / 2015. 6. 9. / 2017. 3. 14. / 2018. 12. 11. /
2019. 11. 12. / 2020. 3. 10. / 2020. 4. 14. / 2021. 1. 5. / 2021. 6. 8. /
2023. 3. 14. / 2024. 4. 9.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제3항 및 제5조 제3항에 의한 회원 인준 및 심사와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인준 심사) ① 신설학회(미가입학회)가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8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한의학회 회원 입회신청서 (별지 서식1)
2. 정관 또는 회칙
3. 창립 총회 회의록
4. 학회 현황 (별지 서식2)
5. 회원 현황 (별지 서식3)
6. 최근 3년 동안 임원 현황 (별지 서식4)
7. 최근 3년 동안 학술 활동 보고서 (별지 서식5-1)
8. 최근 3년 동안 발행한 학술지 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
9. 최근 3년동안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 및 목차 사본 각 1부
10.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학술지 1부
11. 최근 1년 동안 발행한 학술대회 초록집 1부
12. 최근 발행한 학술지(최근호) 4부

② 회원 인준 심사는 학술 활동 평가, 학술지 평가, 회칙의 타당성, 기존학회와의 중복성, 학문의 독자성 등을 평가하며,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③ 회원 인준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차기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입회 신청을 할 수 없다.

제 3 조 (학회 분류) ① 회원은 별표 1과 같이 회원의 종류에 따라 영역별로 분류하며,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학회를 재분류 할 수 있다

제 4 조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회원 학회가 학회 명칭 및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회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3. 변경 사유서
4. 총회 회의록

제 5 조 (학술 활동 평가) ① 회원 학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술 활동을 평가한다.

② 평가는 회원 학회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1월 말까지 제출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회원 관리에 적용한다. 단,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임원 현황(별지 서식4)
2. 학술 활동 보고서(별지 서식5-2)
3. 학회 회칙
4.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제 6 조 (회원 관리) ① 학술 활동 평가 평점이 90% 이상인 회원 학회를 우수 회원으로 선정한다.

② 학술 활동 평가 기본항목 점수가 60% 미만이거나 학술지 발간 회수가 년 2회 미만이거나 원저, 종설의 논문 편수가 년 8편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학술진흥 경고장을 발급한다.

③ 학술진흥 경고장을 3년 연속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자격정지를 할 수 있으며, 학술 활동 평가 기본항목 점수가 3년 연속 40%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는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의학회에서 선정한 육성 지원 대상 학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학술 활동 보고서를 3년 연속 제출하지 않거나 정기총회에 3년 연속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⑤ 회원 학회로서의 순수한 학술 활동을 벗어난 행동으로 의학회 및 회원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⑥ 인준 받지 않은 학회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의학회 정책을 따르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고, 연속해서 3회 경고를 받은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 자격정지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⑦ 회원 징계 기준은 별표 3에 따르며, 제명된 학회는 제명된 해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⑧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입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⑨ 준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⑩ 회원이 해산하거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의학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며, 해산일 또는 탈퇴서 제출일을 탈퇴일로 본다.

제 7 조 (우수 회원) ① 우수 회원으로 선정된 회원 학회에는 우수 회원 증서를 발급한다. 단, 임의로 시행하는 인정의, 인증의 등 유사 제도, 인준 받지 않은 학회 명칭 사용 등 의학회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회와 학술 활동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학회는 우수 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우수 회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2조 1항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말까지 인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2000년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발효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준회원 학회는 이 규정에 의한 회원 학회로 본다.

제 3 조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 개정 사항은 인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학회 명칭 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